

부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566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5667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5011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 선고 2020. 6. 1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5011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자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소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9. 소외 C에게 1,000,000원을 매일 원금 10,000원과 이자 1,000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소33433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01. 5. 3.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652136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5. 7. 9.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90750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15. 3. 17.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2015. 4.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6.경 피고와 2017. 12. 30.까지 이 사건 연대채무액 중 5,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8.까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분할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면제 확인서를 발부하여 주었는데 동 문서에는 채무자 C, 입금자 연대보증인 A, 채무명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90750 대여금, 변제금액 5,000,000원, 변제일자 2017. 12. 28.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연대보증인 A은 채무자 C의 총 채무액중 5백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22756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2011. 5. 13.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9. 2. 7.자 준비서면에서 채무면제 계약에 대하여 민법 110조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9. 2. 11.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2019. 5. 22.자 준비서면에서 채무면제 계약에 대하여 민법 109조 착오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9. 5.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에 대한 C의 주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원고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채무원인이 없는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주채무가 소멸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을 민법 110조에 의해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

설사,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주채무 및 자신의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부

-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주채무자 C의 이 사건 채무는 2011. 5. 3.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이와 함께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3) 그러나, 한편 피고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후인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는 연대보증 채무면제 확인서의 채무명의를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90750 대여금으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 4) 만약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이를 항변하지 않아 보증채무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언제든지 주채무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보증채무가

소멸된다면, 이는 시효연장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시효연장 소송에서 보증채무 지급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인 주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이후 연대보증채무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경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9791 판결 참조)와 달리 보아야 한다.

나. 착오취소에 대한 판단

이미 살펴보았듯이, C의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태규

판사위은숙

판사정승화